예 산 총 칙

2012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017,770,831	30,533,125
일반회계	857,310,953	25,719,329
특별회계	160,459,878	4,813,796
공기업특별회계	108,869,128	3,266,07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7,478,230	1,724,347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403,587	42,108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9,987,311	1,499,619
기타특별회계	51,590,750	1,547,723
주택사업특별회계	73,827	2,215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4,210,000	126,300
기반시설특별회계	567,105	17,013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85,975	2,579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3,856,330	115,69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592,771	47,783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3,573,444	107,203
수질개선특별회계	6,641,297	199,239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30,126,001	903,780
지하수특별회계	864,000	25,920

제 2 조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2012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2,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8,911,88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승인 이후 교부되는 국·도비와 교부세는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